

제278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3.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3월 4일  
전문위원 서 선 옥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19
- 나. 제 출 자: 강선영 의원 외 7명
- 다. 제출일자: 2021년 2월 18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2월 25일

## 2. 제안이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착한가격업소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

나. 착한가격 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함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 고객의 편의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SNS등을 활용한 홍보
- 방역물품 및 소득지원

라.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자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나. 예산조치: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예산 기 편성

다.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2. 19 ~ 2. 24)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 및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하고,
- 안 제3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사항으로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 방역물품 및 소독지원을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5개 자치구<sup>1)</sup>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도봉구, 마포구

- 우리구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31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였음

※ 우리구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2020. 12월 말 기준)

총계	외식업	개인 서비스업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기타
31	12	19	1	16	1	1

※ 2020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원현황

금액(원)			지원물품			
계	시비	구비	종량제 봉투	해충방제	표찰제작	전기 안전점검
11,352,390	9,801,390	1,551,000	50L-9,200개 20L-2,300개	15개 업소	4개소	6개 업소

※ 1년 총 3회 (종량제봉투 3회, 해충방제 1회, 전기안전점검 1회) 지원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우리 구 물가 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019.6.)

## I 목적

-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 《 착한가격업소 적용범위 구체화 》

-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자지단체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그 조례에 따름

## II 지정(평가) 기준

### ① 가격 기준 (45점)

- 가격 수준 : 해당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20점)  
\* 해당 지자체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격 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15점)
-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 (10점)

### ②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30점)

### ③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20점)

-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 (10점, 차등배점)
- 운영 및 시설 부문 :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 (각 5점)

※ 기준별 세부항목은 붙임2 평가표 참고

### ④ 공공성 기준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5점)

### ⑤ 가점 부여 기준 (10점)



-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정부시책 등 사회적가치 반영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등 자치단체장이 10점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 평가표(붙임 2)에 의거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

### III 지정 절차

①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②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지역 내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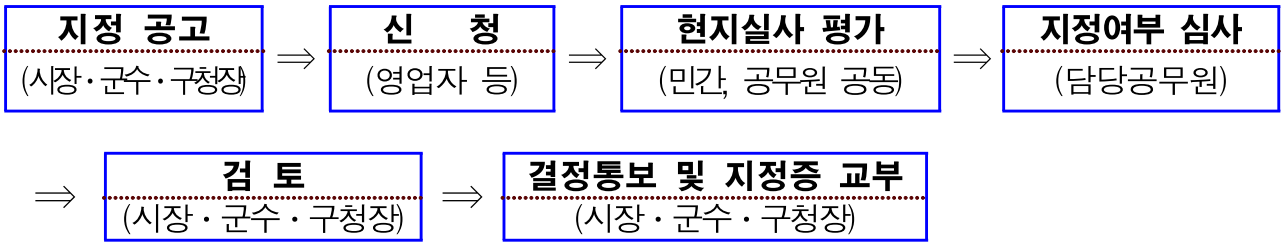
③ **(현지 실사·평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2)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 참여

④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지정여부 검토를 거쳐 영업자에게 3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통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를 조속히 교부할 것.

#### < 지정 절차 >



⑤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후, 업소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내용을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IV 지정 업체수 및 지정시기

- ① **(지정 업체수)**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개인 서비스 품목이 관리·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
- ② **(지정 주기)** 연 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지정도 가능  
 ※ 매년 6월중 착한가격업소 실태 조사 후 현황 보고 (6월말 기준, 행안부)

## V 사후 관리

- ① **(정기 재심사)** 시도 반기별 실시
  - (절 차)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
  -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신청 업소 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여부확인 후 재지정
- ② **(수시 재심사)**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대 상) 지역별 평균물가보다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절 차) 「현지실사 평가」 생략 가능
  - (기 능)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
- ③ **(지정 취소)**

-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 붙임 2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합이 7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
- 당해 시·군·구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승계는 변경 소재지 지자체의 기준을 따름

#### **4 (지정 취소 후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 착한가격업소 현황 정비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 붙임1 착한가격업소 세부평가 기준

□ 점검표 (업소명 :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b>총 점</b>				<b>100</b>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위생모범업 소여부 (○, ×)
가격 기준 (45점)	가격수준 (2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20
			평균가격 미만(5~10%)	15
			평균가격 이하(5%이하)	10
			업소가격 > 평균가격	지정제외
	가격안정 노력(15점)	가격인하	1년 내	15
			1년 이상	13
		가격동결	1년 미만	11
			6개월 미만	9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점)	업소 내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30% 이상	10
			20%~30%	8
10%~20%			5	
위생·청결 기준 (30점)	주 영 업 시 설	주방 등 (10점)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5 5
		매장내 (10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10
	화장실 (5점)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5	
	건물 등 환경(5점)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5	
	품 질 서비 스 기 준 (20점)	이용만족도 (10점)	업소 이용 후 이용전반에 대한 친절도 및 만족도	상
중				5
하				-
운영 (5점)	시설 (5점)	업소 종사자의 복장 및 위생상태, 냉·난방 가동 등	5	
공공성 기준 (5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
		일부만 이행		3
		이행사항 없음		0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점 부여 (10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과 정부기관, 자치단체 표창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율 결정

□ **신규 지정**

-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기준의 합이 10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기 지정 업소의 재심사**

< 적격여부 심사표 >

분야	세부 점검 기준		적격여부	비고 (사유, 일시등)
기준 미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업소가격 > 평균가격)		부적격	
	점검결과,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품질·서비스기준 합의 평점이 총 10점 미만		부적격	
폐업	지정 업소가 폐업(단, 업소명 변경은 제외)		부적격	
자진 취소	자진취소 희망 (업주가 자진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부적격	
기타	휴업 기간	1개월 이상	부적격	
	행정 처분(2년 이내)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부적격	

- 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 / 지역단위 불문 선정배제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검색)

○ (유의 사항)

-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지정 취소
- 비외식업의 경우 점검기준 평점확인
- 지정 취소 확정 후, 인증 표찰 회수 및 인센티브 제공 중단 조치
-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D/B 현행화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oodprice.go.kr>

**붙임3**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2018. 7. 20. 기준]

시·도	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계	%	소 계	한 식	일 식	중 식	양 식	기타 외식	소 계	세 탁업	아·미 용업	목 욕업	숙 박업	기타 서비스업
합계	5,690		4,369	3,679	54	416	62	158	1,321	189	954	95	34	49
		100	76.8	64.7	0.9	7.3	1.1	2.8	23.2	3.3	16.8	1.7	0.6	0.9
서울	856	15.0	581	475	10	67	10	19	275	35	207	6	4	23
부산	571	10.0	487	393	8	41	11	34	84	10	59	7	4	4
대구	228	4.0	170	122	5	37	2	4	58	6	47	5	0	0
인천	216	3.8	166	119	5	33	2	7	50	13	37	0	0	0
광주	201	3.5	136	109	3	15	2	7	65	8	40	10	1	6
대전	282	5.0	218	183	0	28	3	4	64	7	52	3	0	2
울산	113	2.0	78	65	0	10	0	3	35	7	25	3	0	0
세종	23	0.4	20	18	0	0	2	0	3	1	2	0	0	0
경기	765	13.4	579	488	6	49	6	30	186	34	141	6	2	3
강원	330	5.8	264	237	1	13	5	8	66	13	43	3	6	1
충북	323	5.7	271	237	4	18	2	10	52	6	40	3	2	1
충남	286	5.0	223	193	2	14	5	9	63	7	52	2	2	0
전북	317	5.6	253	223	2	21	4	3	64	4	48	4	3	5
전남	314	5.5	267	242	3	15	3	4	47	6	27	13	1	0
경북	421	7.4	294	252	3	31	1	7	127	25	84	15	2	1
경남	312	5.5	260	226	1	21	3	9	52	6	27	15	1	3
제주	132	2.3	102	96	1	4	1	0	30	1	23	0	6	0